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타당성 검토〉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2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5.
3. 회부연월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법¹⁾은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제품안전심의회를 두고,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이하 생략)

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전관리대상제품 정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략)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

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²⁾는 일정 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 그 법령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 제61조³⁾는 2년마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

2)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생활용품⁴⁾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⁵⁾을 제외한 나머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시장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가전, 친환경 신소재 제품 등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제품 구조 및 기능의 다양화·융복합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소비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타당성 검토 시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검토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검토 결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2015년 이전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등 8종의 품목에 대해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법의 전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화학가정용품’ 및 ‘접착제’(2015.04.01.)와 현행법에 따른 ‘부동액’ 및 ‘자동차용 워셔액’(2017.08.22.)이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이 없는 상태임.

* 기존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으로 운영되던 고시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개정하여,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한 개정 절차(규제심사)가 진행 중임.

5) 현행법 개정(2022.10.18.)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전기·생활용품의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신기술·신유형 제품 등의 잠재적 위해요소를 조기에 차단·관리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타당성 검토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나, 현재 동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57